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4. 2.

**국 토 교 통 부
감 사 관**

- 목 차 -

(단위 : 명, 백만원)

연번	처분요구 제목	조치 계획	인원 (금액)	쪽
계	총 7건	시정 4 경고 1 주의 2	경고 3 (금액 426)	
1	관급자재 조달구매 부적정	경고	경고 3	1
2	실시설계용역 손해배상공제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통보	-	5
3	정밀도로지도 구축구간 도로변경사항 미통보	시정 주의	-	10
4	방음판 교체공사 설계 부적정	시정	- (금액 254)	15
5	교차로 개선공사 포장계획 설계 부적정	시정	- (금액 159)	18
6	건설폐기물 설계 부적정	주의	-	23
7	초급기술자 인건비 설계 부적정	시정	- (금액 13)	2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1	감사담당자			
대상기관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처분연월	행정조치	신분조치	재정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원)	
2024. 2.	경고	경고 3	-	-	-

□ 제 목 : 관급자재 조달구매 부적정

□ 내 용

1. 업무 개요

-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2023. 3. 27. “국도22호선 영광 삼학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인 철제가드레일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등 [표1]과 같이 2020. 1. 1.부터 2023. 10. 31.까지 총 818건의 국도 유지·보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총 2,318회에 걸쳐 구매(총 구매금액 110,103,723,640원)하였다.

[표1] “최근 3년간 관급자재 구매 현황”

구 분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10월
관련공사(건)	818	106	316	254	142
구매횟수(회)	2,313	224	892	789	408
구매금액(원)	110,103,723,640	15,089,917,280	26,525,358,830	38,406,709,770	30,081,737,760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등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수공급자계약¹⁾이 체결된 수요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

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로부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2108호, 2023. 7. 1.)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1회 납품 요구 금액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1억 원 이상(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이하 "2단계 경쟁"이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같은 규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 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제49조 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 한편,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요청한 철제가드레일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고시²⁾되었으며, 해당 업체는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³⁾되어 있다.
- 따라서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납품 요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단계 경쟁을 통해 구매해야 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구매 금액을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조달청장이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한 단가계약(「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7호(2023. 2. 1.))

3) 나라장터 종합쇼핑몰(www.shopping.g2b.go.kr) 과거 자료를 검색하여 확인함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런데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표2]와 같이 2023. 3. 27. 및 3. 29. “국도 22호선 영광 삼학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등 5개 공사 시행에 필요한 철제가드레일(102백만원 상당)의 구매 소요를 확인⁴⁾하였는데도 2단계 경쟁을 실시하지 않은 채 납품요구 금액이 1억 원 이상이 되지 않도록 구매 시기를 분할하여 같은 해 4. 10.까지 3개 공사분 62,797,000원, 이로부터 37일⁵⁾이 경과한 같은 해 5. 17. 나머지 2개 공사분 39,547,200원어치의 철제가드레일을 조달청에 구매 요청하였다.

[표2] “관급자재 분할구매 현황”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해당 공사명	사업부서 구매요청일	조달청 구매요청일	납품물량		납품요구 금액(원)	납품업체
				단위	수량		
철제 가드레일 (3012179301)	계 5건					102,344,200	□□ 주식회사
	국도22호선 영광 삼학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2023.3.27.	2023.3.31.	경간	90	17,325,000	
	국도13호선 영암 개신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2023.3.29.	2023.4.10.	경간	46	10,304,000	
	국도13호선 영암 학송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2023.3.29.	2023.4.10.	m	627	35,168,000	
	소계					62,797,000	
	국도13호선 영암 덕진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2023.3.29.	2023.5.17.	경간	73	16,403,100	
	국도13호선 나주 학산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2023.3.29.	2023.5.17.	경간	103	23,144,100	
	소계					39,547,200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제출자료 재구성

- 그 결과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의 공정한 조달구매를 위한 계약 질서를 위배하게 되었고 최대 10백만 원 상당⁶⁾의 예산절감 기회를 상실하였다.⁷⁾

4) 시설안전관리과에서 운영지원과로 “관급자재 구매 요청 ” 문서를 발송

5)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1조 제2항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2단계경쟁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제49조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아니하고 납품요구한 금액의 합계가 동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 회피로 구분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차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30일 이후 위 차단 조치는 해제됨

6)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구매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가격제안시 조달청과 계약된 가격의 100분의 90이상 제시하도록 규정)을 통해 구매함에 따라 구매비용을 최대 10%까지 절감 가능

7) 이에 대하여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2건 공사는 ‘22년부터 가드레일 공사가 진행되면서 일부 자재를 구매하였고 ‘23년에 잔여 물량 시공을 위해 동일 자재 구매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 2단계 경쟁 대상이 아니었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물품 다

□ 조치할 사항

○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은

- ① 앞으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관급자재 구매금액을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경고)
- ②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통해 구매하여야 할 관급자재를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구매를 요청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 | | | | |
|-------------|-------|-------|-------|
|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 운영지원과 | 행정사무관 | ☘☘☘ |
|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 운영지원과 | 행정주사 | ◆◆◆ |
|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 운영지원과 | 행정사무원 | ■ ■ ■ |

※ 향후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분할 구매요청·계약하는 경우 징계 등 엄중 문책할 예정입니다.

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이미 설치된 물품과 호환이 필요한 설비확충 및 부품교환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수요기관의 장이 2단계경쟁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건의 경우 조달청에서 2단계 경쟁 회피로 구분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차단하였으므로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2단계 경쟁을 거쳐 구매하거나 필요시 조달청장으로부터 2단계경쟁 예외인 경우로 허용을 득하여야 하는데도 조달청장의 허용 없이 구매 시기를 분리하여 특정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였으므로 2단계경쟁 회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2	감사담당자			
대상기관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처분연월	행정조치	신분조치	재정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원)	
2024. 2.	주의, 통보	-	-	-	-

□ 제 목 : 실시설계용역 손해배상공제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 내 용

1. 업무 개요

-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2020. 7. 1.부터 2023. 10. 31.까지 “국도1호선 구산교 등 91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총 55개의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면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손해배상공제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2023. 11. 22. 감사일 현재까지 [붙임1]과 같이 손해배상공제등 가입금액 총 43,797,504원에 따른 공제료 등 비용을 실시설계용역 비용에 반영(계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공사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하여 손해배상공제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손해배상공제등 가입에 따른 비용을 건설엔지니어링 비용에 계상

(計上)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288호)」 제4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손해배상공제 등에 가입토록 하고 그 증서를 실시설계의 경우 과업을 완료하기 전¹⁾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요령 제6조에 따르면 손해배상공제등의 가입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공제료를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요령 제11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가입한 손해배상공제등의 가입금액, 가입기간, 피보험자 등이 본 업무요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으로 손해배상공제등에 가입하고 해당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그 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손해배상공제등의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반영하되, 그 가입금액, 가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상기 업무요령에 부합하게 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실시설계용역 손해배상공제 가입 및 비용 지급 부적정

- 그런데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방호울타리 정비 등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실시설계' 용역²⁾의 계약상대방인 주식회사 □□□□□□□가 대상 건설공사 9건 중 최초 계약한 '국도1호선 장성 덕진지구 등 2개지구 방호울타리 정비 공사'³⁾의 착공일인 2023. 3. 27.부터 최종 준공한 '국도77호선 영광 염산지구

1) 「건설기술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해당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2) (계약일자) 2022. 12. 9., (계약금액) 131,240,000원, (계약기간) 2023. 3. 16. ~ 2024. 2. 19.

3) (공사기간) 2023. 3. 27. ~ 2023. 9. 14.

등 3개지구 방호울타리 정비공사⁴⁾의 준공일인 2023. 9. 23.까지 손해배상공제 등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모든 대상공사가 마무리된 시점인 2023. 11. 21.이 되어서야 가입기간을 2023. 11. 21.부터 2026. 11. 20.까지로 하는 불필요한 손해배상공제등 계약⁵⁾을 체결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손해배상을 실질적으로 담보하지 못하였는데도 2023. 12. 29. 손해배상공제등 가입비용 699,795원을 준공금에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는 등 [표]와 같이 총 3건의 실시설계 용역비용에 공제료 총 1,012,523원을 계상하여 부당하게 준공 처리하였다.

[표] “손해배상공제등 가입 처리 부적정 현황”

연번	건 명	착공일	준공일	공제 가입일	공제료(원)
	3건	-	-	-	1,012,523
1	방호울타리 정비 등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실시설계용역(2023년)	2023.03.27.	2023.09.23.	2023.11.21.	699,795
2	관내 배수시설 등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2022년)	2022.06.10.	2022.10.06.	2022.10.31.	140,000
3	국도 77호선 해남군 등 4개노선 도로유지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2021년)	2021.06.04.	2021.09.13.	2021.10.25.	172,728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제출자료 재구성

나. 실시설계용역 손해배상공제 미가입

-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해남관내 방호울타리 정비 등 도로안전 및 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⁶⁾을 2022. 12. 14.부터 2023. 12. 8.까지 시행하면서 계약상대방인 주식회사가 설계대상 건설공사 4건의 공사를 2023. 3. 28.부터 착공하여 2023. 8. 24. 준공⁷⁾하였는데도, 2023. 11. 23. 감사일 현재까지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를 가입기간으로 하는 손해배상공제등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건설공사의 손해배상을 실질적으로 담보하지 못하

4) (공사기간) 2023. 3. 28. ~ 2023. 9. 23.
5) 계약금액 131,240,000원, 공제가입금액 118,609,296원, 공제료 699,795원
6) (계약일자) 2022.12.22., (계약금액) 68,316,000원
7) 국도2호선 영암·강진관내 방호울타리 설치공사 등 착공(2023. 3. 28.~) 이후 국도27호선 완도 약산면 지내 등 2개소 방호울타리 정비공사까지 대상 건설공사 총 4건을 최종 준공(2023. 8. 24.)

고 있다.

- 이를 비롯하여 2020. 7. 1.부터 2023. 11. 22. 감사일 현재까지 진행 중인 실시설계용역 8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용역 대상 건설공사가 실시설계 완료 전에 착공되었는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에 따라 손해배상공제등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은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는 중에 건설공사를 착공하는 경우 손해배상공제등 가입기간을 미준수하여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담보하지 못하거나 손해배상공제등 미가입기간에 해당하는 가입비용을 준공금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기술안전정책관(기술혁신과장)**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실시설계용역 준공 전에 건설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손해배상공제등의 가입기간 및 증서제출 시기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붙임] “진행 중인 전체 실시설계용역 중 손해배상공제등 미가입 내역”

(단위 : 원)

연번	실시설계용역	대상공사			손해배상공제등 미가입내역	비 고
		건명	착공일	준공일	미가입 기간	
계	8건	-	-	-	-	
1	국도77호선 영광군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국도13호선 해남 삼산교 (상) 등 3개소 시설물 보수 공사 등 9개 공사	2023-03-28	2024-01-21	2023. 3. 28. ~ 현재	
2	관내 도로시설 유지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국도24호선 장성 진원 학림 지구 폭원부족 정비공사 등 7개 공사	2023-03-27	2024-01-17	2023. 3. 27. ~ 현재	
3	2023년 광주국토 교량 및 터널 시설물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국도22호선 영광 와탄교 등 3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등 39개 공사	2022-11-30	2024-03-02	2022. 11. 30. ~ 현재	
4	2023년 광주국토 터널 전기 및 방재시설물 보수공사 실시 설계용역	국도1호선 장성 호남제2 터널 조명케이블 보수공사 등 6개 공사	2023-03-24	2023-12-15	2023. 3. 24. ~ 현재	
5	해남관내 방호울타리 정비 등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사업 실 시설계용역	국도18호선 우수영IC~해남 육교간 방호울타리 정비공사 등 4개 공사	2023-03-28	2023-08-24	2023. 3. 28. ~ 2023. 8. 24.	
6	절토사면 등 낙석산사태 정비 도로유지보수 실시설계용역	국도15호선 화순 읍애지구 절토사면 정비공사 등 4개 공사	2023-04-26	2023-09-22	2023. 4. 26. ~ 2023. 9. 22.	
7	관내 방음벽 등 도로안전시설 실시설계용역	국도22호선 영광 묘량 삼학 등 12개소 배수시설 정비 공사 등 2개 공사	2023-09-22	2023-12-15	2023. 9. 22. ~ 현재	
8	관내 조명시설 등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실시설계용역	국도23호선 영광 묘량지구 등 19개소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공사 등 6개 공사	2023-09-22	2023-12-15	2023. 9. 22. ~ 현재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제출자료 재구성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3	감사담당자			
대상기관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처분연월	행정조치	신분조치	재정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원)	
2024. 2.	시정, 주의	-	-	-	-

☐ 제 목 : 정밀도로지도 구축구간 도로변경사항 미통보

☐ 내 용

1. 업무 개요

-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2022. 3. 23.부터 2023. 11. 24. 감사일 현재까지 '국도 2호선 영암 서호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등 19건의 국도 개량 및 보수 공사를 시행 완료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정밀도로지도¹⁾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하고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관할 구역에서 도로노선의 변경 등 정밀도로지도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측량성파로서 자율주행자동차에 활용 가능하도록 도로 등의 위치정보와 속성정보가 포함된 정밀전자지도를 말함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법 제2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도로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시·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와 도로표지, 신호기, 안전표지, 자율협력주행시스템,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주는 도로부속물이 설치·변경 또는 제거된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변경사항 통보에는 정밀도로지도 갱신이 필요한 노선명, 변경사항의 발생한 위치 및 변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한 장소의 지형도면, 지적도(임야도를 포함한다) 또는 도로명주소기본도, 그 밖에 변경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²⁾(2021. 5. 25. 국토교통부 고시) 제14조부터 제17조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관할 구역에서 정밀도로지도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로서 도로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시·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 도로표지, 신호기 등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주는 도로부속물이 설치·변경 또는 제거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정밀도로지도 갱신이 필요한 대상 구간은 정밀도로지도 구축이 완료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에 의한 기본측량성과가 고시된 구간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 도로관리청은 갱신이 필요한 노선명, 정밀도로지도 제작 작업규정에 따른 MMS³⁾ 표준자료 등을 첨부한 후, 도로의 신설 및 확장 관련 변경사항은 도로공사 준공 7일 전까지, 도로의 개량 및 보수 관련 변경사항은 도로공사 준공

2)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고, 도로변경사항 통보에 관한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준공하는 도로 신설, 확장, 개량, 보수공사부터 적용함

3) MMS(Mobile Mapping System, “이동형측량시스템”)란 레이저스캐너, 디지털카메라 등 지형지물 측량센서와 GNSS, INS, DMI 등 위치 및 자세 측정센서를 차량에 탑재하여 자료를 취득하는 시스템을 말함

14일 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한편,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전라남·북도내 일반국도 19개 노선 4,069.9km에 대하여 2022. 3. 23. 공간정보관리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측량(정밀도로지도 구축) 성과를 고시(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2-1351호) 하였다.
- 따라서 도로관리청⁴⁾은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기본측량성과가 고시된 구간에서 도로 개량·보수공사로 인해 정밀도로지도 갱신이 필요한 경우 공사 준공 14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런데도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2022. 5. 3. '국도2호선 영암 서호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의 준공으로 도로가 개량되었으므로 그 변경사항을 도로공사 준공 14일 전인 2022. 4. 19.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했어야 하는데도, 2023. 11. 24.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 이를 비롯하여 [붙임]과 같이 총 19건의 도로 개량사업 및 보수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정밀도로지도 갱신에 필요한 변경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지 않고 있어 정밀도로지도가 적기에 갱신되지 못하고 있다⁵⁾.

□ 조치할 사항

-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은

4) 정밀도로지도 구축·갱신에 관한 변경사항 통보는 도로관리청인 지방국토관리청(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권한 등을 위임받은 일반국도 구간에 한함)이나, 실제 도로 유지·관리 기관인 국토관리사무소에서도 통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함(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 '24. 1.16)

5) 이에 대해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국도22호선 영암 서호지구 교차로개선공사 등 19건을 포함하여 향후 도로가 개량되어 정밀도로지도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적기에 통보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함

- ① 도로 개량 및 보수 사업이 준공되었으나 통보하지 않은 19건 도로사업의 변경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②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정밀도로지도 갱신에 필요한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붙임] “최근 2년간 도로개량 및 보수사업 준공 현황(2022. 3. 23. ~ 2023. 11. 24.)”

연번	공사명	시공사	착공일	준공일	공사유형
계	총 19건				
1	국도2호선 영암 서호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21.09.29.	'22.05.03.	- 교차로 개선(L=188m) - 가·감속 차로 설치
2	국도23호선 영광 보라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20.03.26.	'22.07.23.	- 위험도로 개선(확장) L=420.0m, B=11.5m - 평면교차로 1개소
3	국도2호선 영암 학계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21.09.29	'22.09.30.	- 교차로 개선(L=383m) - 가·감속 차로 설치
4	국도13호선 나주 도산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20.03.26	'22.10.13.	- 위험도로 개선(L=380m) - 가·감속 차로 설치
5	국도23호선 함평 신광지구 폭원부족 정비공사		'18.08.24.	'22.11.07.	- 폭원부족 정비 1식 L=6.120km, B=2.0m(상,하)
6	국도24호선 함평 삼축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21.03.15.	'22.11.10.	- 교차로 개선(L=310m) - 회전교차로 신설(1개소)
7	국도24호선 무안 매곡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20.03.26.	'22.11.17.	- 위험도로 개선(L=480m) - 가·감속 차로(2개소) 설치
8	국도23호선 나주 내정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20.11.09	'22.12.20	- 위험도로 개선(L=540m) - 가·감속 차로 설치
9	국도77호선 무안 만풍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19.06.19.	'22.12.16.	- 위험도로 개선(신설, 확장) L=1,390m, B=11.5m
10	국도77호선 영광 아월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20.11.09.	'22.12.26.	- 위험도로 개선(L=1.0km)
11	국도77호선 무안 유월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19.06.19.	'23.06.09.	- 위험도로 개선(신설, 확장) L=840m, B=11.5m
12	국도13호선 담양 무정지구 폭원부족 정비공사		'19.12.10.	'23.04.07.	- 폭원부족 정비 1식 L=0.842km
13	국도23호선 영광 불갑지구 폭원부족 정비공사		'18.08.24.	'23.05.08.	- 폭원부족 정비 1식 L=5.708km
14	국도 13호선 담양 동산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21.08.30	'23.05.11.	- 교차로 개선(L=240m) - 가·감속 차로 설치
15	국도23호선 영암 연소2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20.06.05	'23.05.25.	- 위험도로 개선(L=700m) - 가·감속 차로 설치 - 피암터널 신설(L=130m)
16	국도23호선 나주 대산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20.11.09	'23.06.22.	- 위험도로 개선(L=760m) - 가·감속 차로 설치
17	국도13호선 영암 개신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21.03.29	'23.08.09.	- 교차로 개선(L=700m) - 가·감속 차로 설치
18	국도13호선 영암 학송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21.09.08	'23.08.09.	- 교차로 개선(L=834m) - 가·감속 차로 설치
19	국도13호선 나주 학산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21.03.15	'23.10.28.	- 교차로 개선(L=500m) - 가·감속 차로 설치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제출자료 재구성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4	감사담당자			
대상기관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처분연월	행정조치	신분조치	재정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원)	
2024. 2.	시정	-	감액	254,866,000	-

□ 제 목 : 방음판 교체공사 설계 부적정

□ 내 용

1. 업무 개요

-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2023. 11. 3. 전라남도 무안군 OO읍 OO길 000(OO동)에 있는 (주)□□건설(대표자 AAA)과 '국도1호선 무안 청계지구 등 25개소 방음판 교체공사'를 총 공사부기금액 247,044,450원에 도급 계약하고 같은 해 11. 9. 착공하여 2024. 2. 6. 준공 예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등 2건¹⁾의 방음판 교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고 되어 있고,
- 같은 예규 제19조의5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의 발생, 특정 공종의 삭제, 시공 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1) 공사명 / 도급액 / 시공사 : 국도1호선 장성 단광지구 등 11개소 방음판 교체공사 / 229, 639,180원 / (주) ◆◆◆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2023. 2. 2. 국토교통부(도로시설안전과)에서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²⁾(‘22. 12. 29.) 및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방음벽 화재사고³⁾(‘23. 1. 3.)를 계기로 방음시설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수립·발표(‘23. 2. 2.)하고, 2023. 2. 8. 국토교통부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 특별·광역시·도 등 각 도로관리청에 PMMA⁴⁾ 방음터널 교체 명령 및 방음시설 화재안전 대책을 시행할 것을 통보(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716호)하였다.
- 위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 Ⅲ. 추진 대책 2. 방음벽에 따르면 PMMA 소재 방음벽은 해당 관리청이 화재 확산 위험성을 종합 검토하여 2024년 2월까지 철거·교체 등 조치하되, 연장이 긴(100m 이상) 방음벽은 최소 50m마다 불연성 소재 사용 또는 일부 개방 등을 통해 화재 확산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다⁵⁾.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런데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실제 교체하여야 할 방음판의 수량을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하는데도 ‘청계지구 방음판 교체공사’의 경우, 가로 1.96m, 세로 0.5m 규격의 방음판은 16개, 가로 1.96m, 세로 1.0m 규격의 방음판은 194개를 과다하게⁶⁾ 계상하여 107,827,000원이 낭비 될 우려가 있는 등 [표]와 같이 ‘청계지구 방음판 교체공사’ 등 2건 공사에 실제 방음판 교체 필요 수량

2) 사망 5명 등 49명 사상자 발생

3) 대구 성서IC 인근 승용차 화재로 방음벽 300m중 36m 전소(인명피해 無)

4)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 인화점(불붙는 온도, 280℃)이 낮은 가연성 플라스틱

5)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552(대리1교) 등 36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PMMA 방음판 재질의 연장 100m 이상 방음벽에 대하여 기존 PMMA 재질 방음판을 강화접합유리(8.76mm) 재질의 방음판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6) 방음판 철거, 방음판 설치단가를 방음판 규격별 개수 단위로 산정하고도 설계서 반영 수량은 방음판 면적으로 잘못 적용(2㎡/1개 → 2개, 4㎡/1개 → 4개)하여 과다하게 계상됨

보다 390개가 과다하게 반영되어 있어 공사비 254,866,000원 상당액이 낭비 될 우려가 있다).

[표] “방음판 교체 설계현황 및 조정 내역”

(단위 : 개, 천원)

공사명	공종	규격	계약내역(a)		조정내역(b)		증·감(b-a)	
			수량	공사비	수량	공사비	수량(개)	공사비
계			821	476,683	431	221,817	-390	254,866
소계			517	247,044	307	139,217	-210	107,827
청계지구 방음판 교체공사 (‘23.11~’24.02)	방음판철거	1960*500 (PMMA)	137	1,035	121	914	-16	121
	방음판설치	1960*500 (강화접합유리)	137	45,432	121	40,126	-16	5,306
	방음판철거	1960*1000 (PMMA)	380	3,631	186	1,777	-194	1,854
	방음판설치	1960*1000 (강화접합유리)	380	196,946	186	96,400	-194	100,546
소계			304	229,639	124	82,600	-180	147,039
단광지구 방음판 교체공사 (‘23.11~’24.02)	방음판철거	1960*1000 (PMMA)	192	1,711	96	855	-96	856
	방음판설치	1960*1000 (강화접합유리)	192	99,052	96	49,526	-96	49,526
	방음판철거	3960*1000 (PMMA)	112	1,212	28	303	-84	909
	방음판설치	3960*1000 (강화접합유리)	112	127,664	28	31,916	-84	95,748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은 위 2건 공사에 과다 계상되어 있는 방음판 수량을 삭제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하여 254,866,000원 상당을 “감액”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7) 이에 대하여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인으로 부터 설계도서 검토결과 수량 오류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상태로 빠른 시일 내에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하여 감액 조치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제출함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5	감사담당자			
대상기관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처분연월	행정조치	신분조치	재정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원)	
2024. 2.	시정	-	감액	158,815,000	-

□ 제 목 : 교차로 개선공사 포장계획 설계 부적정

□ 내 용

1. 업무 개요

-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2022. 2. 11. 전라남도 여수시 000길 0(00동)에 있는 □□건설(주)(대표자 AAA)와 '국도24호선 담양 원촌지구 교차로 개선공사'를 총 공사부기금액 471,063,000원¹⁾에 도급계약하고 같은 해 2. 22. 착공하여 2024. 2. 11. 준공 예정으로 시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의 발생, 특정 공종의 삭제, 시공방법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²⁾ 4. 덧씌우기 및 5. 절삭 덧씌우기에 따르면 덧씌우기는 기존 포장의 구조적 능력을 보완하는 것 외에 노면의 마모,

1) 2023. 11.21. 총공사부기금액은 515,638,000원으로 변경 계약됨

2) 이 지침은 「도로법」에 규정된 각종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와 기타 일반 공중에 이용되는 중요 도로에 사용되는 표층, 중간층, 기층 등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및 유지보수에 적용함(2017.4.)

노화 및 평탄성 개선, 균열을 통해 빗물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구조물이나 포장 면과의 단차 등의 문제로 덧씌우기 공법을 채택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절삭 덧씌우기, 재포장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절삭 덧씌우기는 포장 표층부의 파손이 심하거나 연석, 중앙분리대 등의 구조물 때문에 일반 덧씌우기가 어려울 경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4편 기타안전시설 2.과속방지턱 2.3설치장소 나.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³⁾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30km/시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⁴⁾에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교통정온화시설의 하나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기존 국도 포장의 표층부 파손이 심하지 않거나 연석 등 기존 구조물과의 단차 발생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덧씌우기 포장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고, 종단계획 상 부득이하게 절삭이 필요한 곳에 한하여 절삭 덧씌우기 공법을 적용하여 포장공사를 경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 또한 일반국도는 주간선 또는 보조간선 도로에 해당하므로 일반국도의 과속방지턱은 제한속도 30km/시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에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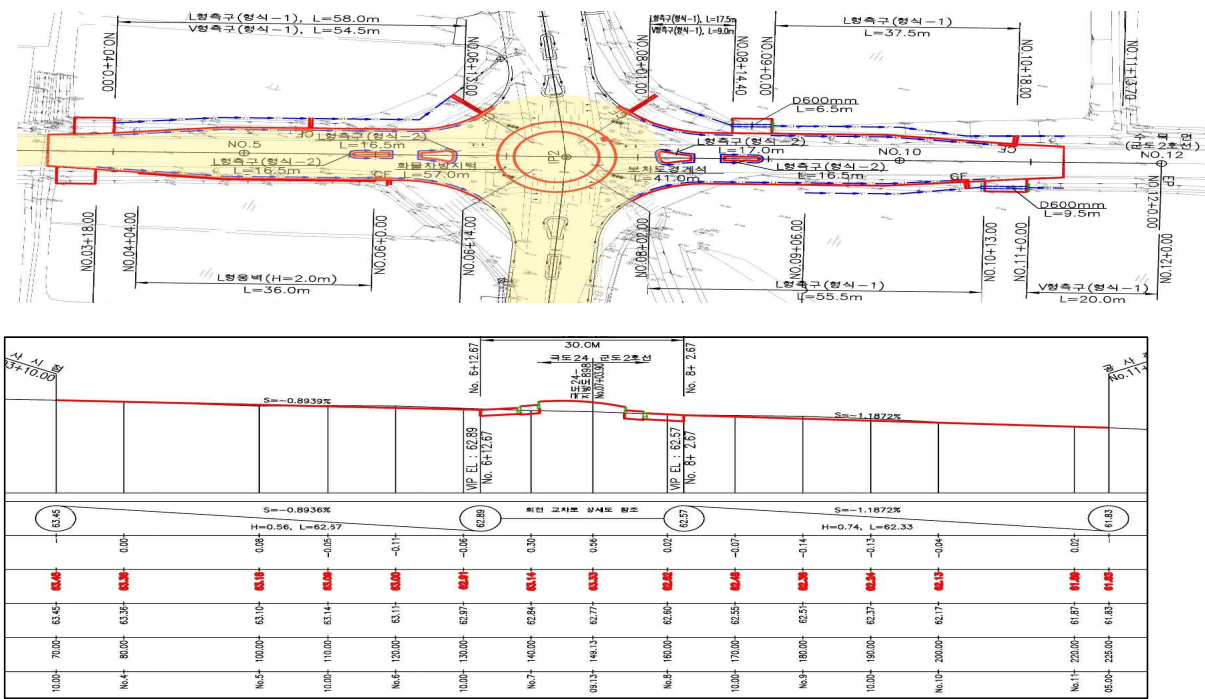
- 그런데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국도24호선 담양 원촌지구 교차로 개선공사'를 시행하면서 No.5 +10~6+10(20m) 구간 260m²(13m×20m) 및 No.8+10~10+10(40m) 구간 520m²(13m×40m)은 종단계획 상 절삭이 필요하므로 절삭 후 덧씌우기 공법을 적용하고, 진입 및 진출차로 신설 부분 포장 면적 500m² 제외한 나머지

3)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도로의 기능별 구분 등)에 따르면 일반국도는 보조간선도로 또는 주간선도로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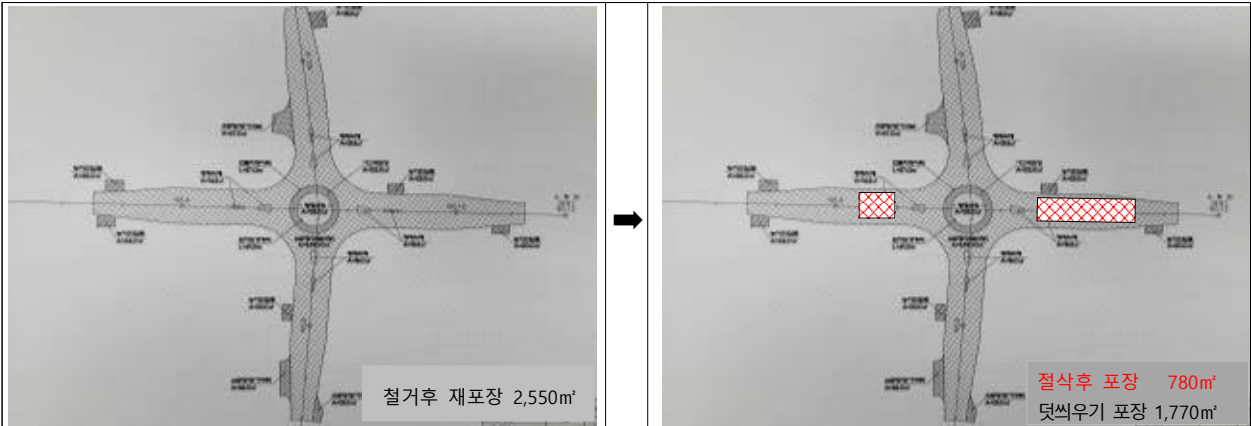
4)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해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및 생활도로구역 등을 말함.

1,770m² 구간은 기존 포장의 표층부 상태⁵⁾가 양호하고 구조물이나 포장면과의 단차 등이 크지 않아 덧씌우기 공법을 적용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기존 국도 아스콘 포장부분 전체 2,550m²를 철거 후 재포장(표층 5cm, 기층 15cm)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표]와 같이 공사비 25,510,000원 등 총 144,775,000원 상당을 절감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림1] “국도24호선 담양 원촌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평면 및 종단면도”



[그림2] “기존도로부 포장 변경시공(안)”



5) 23.11.22. 현장 기존 포장부 코어채취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기층부 및 표층부 포장상태는 양호하여 절삭 덧씌우기 공법은 불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표] “포장 방식 변경에 따른 공사비 비교”

(단위 : 원)

공 종	단위	당 초(a)		변경(b)		증·감 (b-a)
		수량	공사비	수량	공사비	
합 계(1+2+3)			232,557,000		87,782,000	-144,775,000
1. 도급액			60,434,000		34,924,000	-25,510,000
- 토 공			9,299,000		4,345,000	-4,954,000
아스콘 포장 깨기	m³	687	9,299,000	321	4,345,000	-4,954,000
- 포장공			51,135,000		30,579,000	-20,556,000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40mm, t=15)	m²	1,072	5,801,000	523	2,830,000	-2,971,000
아스콘 포장(표층 t=5cm)	m²	3,050	3,296,000	500	540,000	-2,756,000
아스콘 포장(기층 t=15cm)	m²	3,050	6,362,000	500	1,043,000	-5,319,000
절삭 후 덧씌우기(t=5cm)	m²	-	-	780	3,419,000	3,419,000
덧씌우기(t=5cm)	m²	-	-	1,770	5,360,000	5,360,000
혼합골재	m³	1,383	35,676,000	674	17,387,000	-18,289,000
2. 폐기물처리비	ton	1,607	69,000,000	543	23,280,000	-45,720,000
3. 관급자재비			103,123,000		29,578,000	-73,545,000
- 아스콘(기층)	ton	1,290	103,123,000	370	29,578,000	-73,545,000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제출자료 재구성

- 또한 [그림3] 부대계획 평면도에 따르면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고원식 횡단 보도⁶⁾ 4개소와 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어 마을주민 보호구역⁷⁾으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인 대전면사무소 방면에 한하여 과속방지턱 2개소만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과속방지턱 총 8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공사비 14백만원⁸⁾ 상당을 절감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6)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7-2 고원식 횡단보도는 차량의 접근성이 요구되는 도로나 차량의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등)에서 설치한다고 되어있음.

7)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976호('18.3.15)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 대상구간으로 지정됨

8) 마을주민보호구역 외 구간 과속방지턱 6개소 설치 도급액 12,690,000원, 관급자재비(아스콘) 1,350,000원

[그림3] “부대계획 평면도”



□ 조치할 사항

-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은 위 공사의 포장 방식을 전면 철거 후 재포장에서 절삭 덧씌우기 및 덧씌우기 등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하여 144,775,000원 상당을 “감액”하고, 설치할 필요가 없는 과속방지턱 6개소를 삭제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하여 14,040,000원 상당을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6	감사담당자			
대상기관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처분연월	행정조치	신분조치	재정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원)	
2024. 2.	주의	-	-	-	-

□ 제 목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할증 설계 부적정

□ 내 용

1. 업무 개요

-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2023. 9. 21. 전라남도 무안군 OO읍 OOOO로 000-00(OO리)에 있는 유한회사 □□환경(대표자 AAA)과 “국도24호선 장성 진원 을곡지구 폭원부족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1차)”을 총용역부기금액 95,800,000원에 계약하고 같은 해 9. 25. 착공하여 2025. 9. 13.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는 등 총 4건의 폭원부족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 아스콘, 폐콘크리트) 처리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7호) 제19조의5에 따르면 계약담당 공무원은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의 발생, 특정 공종의 삭제, 시공방법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건설폐기 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설폐기물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당초 발주한 건설폐기물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¹⁾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런데,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국도24호선 장성 진원 울곡지구 폭원부족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의 경우 산출내역서에 따라 건설폐기물 1,726.5톤(ton)을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는데도, 관련 규정에도 없는 물량 할증을 적용하여 2,072.0톤(ton)을 처리하는 것으로 과다하게 설계에 반영하는 등 [표]와 같이 총 4건의 폭원부족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8,462.6톤(ton)에 대하여 부적정하게 할증을 적용하여 1,692.4톤(ton)을 추가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하였다.

[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량 할증에 따른 용역금액 비교”

(단위 : ton, 원)

용역명	수량산출서	할증 설계내역(A)		정당 설계내역(B)		과다 설계(B-A)		비고
	수량(ton)	수량(ton)	금액(원)	수량(ton)	금액(원)	수량(ton)	금액(원)	
계(4건)	8,462.6	10,155	531,670,000	8,462.6	443,045,000 (432,750,000)	1,692.4	88,625,000 (86,570,000)	
국도24호선 장성 진원 울곡지구 폭원부족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1,726.5	2,072.0	108,150,000 (95,800,000)	1,726.5	90,125,000 (79,830,000)	345.5	18,025,000 (15,970,000)	설계금액 (계약금액)
국도13호선 담양 무정 평지지구 폭원부족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2,597.1	3,117.0	163,390,000	2,597.1	136,150,000	519.9	27,240,000	미계약
국도24호선 장성 진원 학림지구 폭원부족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2,458.6	2,950.0	154,420,000	2,458.6	128,680,000	491.4	25,740,000	미계약
국도77호선 영광 염사 두우지구 폭원부족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1,680.4	2,016.0	105,710,000	1,680.4	88,090,000	335.6	17,620,000	미계약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제출자료 재구성

1)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III.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 및 위·수탁 계약등 1.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가. 적정처리비(예정가격) 산정에 할증과 대한 내용은 없으며,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할증과 관련한 1-3 재료 및 노임의 할증, 1-4 품의 할증에도 건설폐기물처리비의 할증에 대한 내용은 전무함

□ 조치할 사항

-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은 위 4건의 적용폭원부족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은 실제 발생한 폐기물 물량대로 정산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설계시 규정에 없는 할증이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7	감사담당자			
대상기관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처분연월	행정조치	신분조치	재정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원)	
2024. 2.	시정	-	감액	12,679,280	-

□ 제 목 : 초급기술자 인건비 설계 부적정

□ 내 용

1. 업무 개요

-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2023. 3. 27. 전라남도 해남군 OO읍 OO로 00-00에 있는 □□종합개발(주)(대표자 AAA)와 '국도77호선 영광 옥실지구 이동식과 적검문소 설치공사'를 총부기계약금액 122,686,850원에 도급계약하고 같은 해 3.31. 착공하여 2024. 3. 24.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 총 2건의 이동식과적검문소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르면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¹⁾는 초급기술자 1명을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자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 같은 규칙 별표6(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의 인건비로, 시험관리인은 현장에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가 아닌 건설공사

배치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중에서 최하위 등급자로 정하고,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에 배치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초급기술자의 인건비는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로 보아 간접노무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런데,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국도77호선 영광 옥실지구 이동식과적검문소 설치공사의 경우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에 해당하여 초급기술자 1명을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고 해당 초급기술자 인건비는 이미 간접노무비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반영할 필요가 없는데도, 해당 인건비를 별도로 품질관리활동비에 반영하는 것으로 설계하는 등 [표]와 같이 총 2건의 이동식과적검문소 설치공사의 초급기술자 인건비가 간접노무비 외에 품질관리활동비로도 반영되어 있어 공사비 12,679,280원 상당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

[표] “초급기술자 인건비 중복 반영 현황”

(단위 : 원)

연번	사업명	공사기간	계약금액	품질관리활동비 반영 금액
1	국도77호선 영광 옥실지구 이동식과적검문소 설치공사	'23.3.27. ~ '24.3.24.	122,686,850	6,339,640
2	국도77호선 무안 송석지구 이동식과적검문소 설치공사	'23.3.27. ~ '24.3.23.	219,845,400	6,339,640
계			342,532,250	12,679,280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은 이동식과적검문소 설치공사에 중복하여 계상된 초급 기술자 인건비를 제외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하여 12,679,280원 상당을 “감액” 하시기 바랍니다.(시정)